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9. 25.(수)

임신·출산·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

-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 계기 저출생 분야 국가 지원 내용 안내 -

-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한 ▲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▲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▲ 아이돌봄서비스 등 확대 -

정부는 **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**을 **계기**로 **임신·출산·양육**이 **행복**한 **선택**이 될 수 있도록 **다둥이 가정**을 **대상**으로 한 **국가 지원 사업**을 **안내**한다고 밝혔다.

그간 **정부는 다둥이 출산 비율 증가 추세** 등을 고려해 **다둥이 가정**을 **대상**으로 **충분한 지원을 위해 수요자 간담회** 등을 거쳐 **'난임·다둥이 지원대책**('23.7.27)' 을 발표하였다. 그 결과 **올해**부터 **다둥이 가정 등의 목소리**를 반영한 **▲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▲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▲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사업**이 **본격적**으로 **확대 시행 중**이다. **정부**는 앞으로도 **다둥이 가족의 임신·출산·양육 부담 완화** 등 **수요자**가 **체감**할 수 있는 **지원**을 **지속 확대**할 계획이다.

* **(수요자 간담회)**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가정 축하방문·의견청취('23.5.18), 난임·다둥이 임산부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('23.5.25), 유아기 및 초등학생 다둥이 학부모 정책 간담회('23.6.8)

다둥이 가정을 **대상**으로 임신·출산·양육 분야의 **주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.**

1 (임신) 임신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

○ **(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) 다둥이 임신**은 **태아 한 명**을 **임신**한 경우와 달리 **의료비 지출**이 **늘어나는 점**을 **감안**하여 **다둥이 임신**에 대해 **바우처 지원금액**을 **태아 당 100만 원씩**으로 **확대**하였다('24.1~).

* **(이전)** 다태아 일괄 140만원 → **(개선)** 태아 한명 당 100만원(5자녀 총 500만원)

○ **(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) 다둥이 임신** 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**의료비 지출 부담**이 **큰 점을 감안**해 **고위험 임산부**(다둥이 임신,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) **의료비 지원**에 대한 **소득기준**을 **폐지**하였다('24.1~).

*** (이전)** 중위소득 180%까지 지원 → **(개선)** 소득기준 폐지

**** (지원내용)** 치료목적 의료비 중 **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% 지원** (300만 원 상한)

○ **(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) 다둥이 임신부**는 **주로 상급병원**에서 **진료**가 **필요**하며, **필수 검사항목**도 **많아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요구된다. 특히 33주**부터는 **매주 태아검진**이 **필요**하다. **정부**는 이를 감안해 **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**을 **보장**할 수 있도록 **'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*'** **등을 제공** 중이며, **현장**에서 법에 따라 검진시간 등이 확보**될 수 있도록 **행정 지도**도 **강화**중이다.

***** 건보공단의 임신·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·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,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(문자 등)하는 서비스

**** (「근로기준법」제74조의2)** 사용자는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**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**을 청구하는 경우 **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시간**을 **허용**해 주어야 한다.
(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) 지자체는 … **다둥이 임신,** 의사가 고위험 판단 시 **상기 기준(~28주: 4주마다 1회, 29~36주: 2주 1회, 37주~: 주 1회) 초과 실시 가능**

○ **(임신기 근로시간 단축)** 조산 위험 등으로부터 **다둥이 임산부 등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**을 **확대할 예정**이다('25.上).

*** (이전)**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 → **(개선)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(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간)**

○ **(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) 생애초기부터 임산부, 영아의 건강관리**를 위해 **보건소**에서 **간호사 등 전문인력**이 **가정**을 **방문**하여 **건강상담, 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**를 **제공** 중이며, **서비스 지역**을 지속 **확대**할 계획이다.

*** 서울시 25개 자치구(자체 사업) 및 전국 시군구 68개소 보건소**에서 **제공중**

2 (출산) 출산 비용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

○ **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)** 출산 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둥이 가정을 위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,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하여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('24.1~).

구 분	이 전		⇨	개 선	
	지원인력	지원기간		지원인력	지원기간
신생아 1명	1명	(첫째아) 5~15일 (둘째아 이상) 10~20일		좌 동	
신생아 2명 (쌍둥이)	2명	10~20일		좌 동	
신생아 3명~ (세쌍둥이~)	2명	15~25일		**태아 수에 맞춰 증원** *세쌍둥이 3명, 네쌍둥이4명 등 **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(최대 40%)**	**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** *(기존) 15~25일 → **(개선) 15~40일**

*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·기간 등 상이(지방이양사업)

** (활용기준) 출산일로부터 (기존) 120일 → (개선) 180일 이내

○ **(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)**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('25.上).

*** (배우자 출산 휴가)** (이전) 10일 → **(개선) 20일**

○ **(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)**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* 부담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**하였다('24.1~).

* **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**(▲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, ▲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~1,000만 원 상한 지원)

**** (지원기간)** (이전) 1년 4개월 → **(개선) 2년**

○ **(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)**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.

* 신생아집중치료실(NICU)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**전문인력**(간호사)**을 배정**하여 **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**

** 서울·부산·광주·인천·대구·경기남부(수원) 등 **6개 지역**

3 (양육) 출산 후 양육 지원 등 강화

○ **(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)** 다둥이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**2자녀**(쌍둥이포함) **이상 가구**에 대한 **본인부담금 할인 적용** 등 **정부 지원**을 **확대**하였다. 또한, **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**한 가정의 경우는 **양육공백**으로 **인정**하고 **아이돌보미를 지원중이다**('24.1~).

【 2023년 】

유형	소득기준 (중위소득)	정부지원비율	
		0~5세	6~12세
㉮형	75% 이하	85%	75%
㉯형	120% 이하	60%	20%
㉰형	150% 이하	15%	15%

⇒

【 2024년 】

정부지원비율		
1자녀		**2자녀** 이상
0~5세	6~12세	
85%	75%	본인부담금의 **10% 추가**지원
60%	**30%**	
20%	15%	

○ **(첫만남이용권 확대) 다둥이·다자녀 가구**의 **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**을 위해 **둘째아 이상**은 **자녀당 300만 원**으로 **지원을 확대하였다**('24.1~).

* **(이전)** 출생아 당 200만 원 → **(개선)** 둘째아 이상 300만 원

○ **(부모급여 인상)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, 영아기 돌봄**을 **두텁게 지원**하기 위해 **부모급여 지원 수준**을 **확대하였다**('24.1~).

* **(이전)** 월 0세 70만 원, 1세 35만 원 → **(개선)** 월 0세 100만 원, 1세 50만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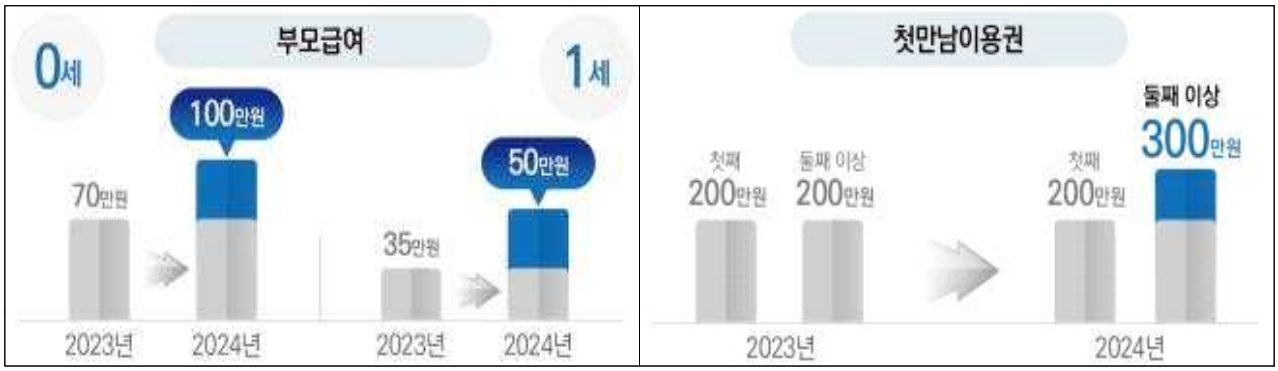

○ **(아동수당) 아동 양육**의 **경제적 부담**을 **경감**하기 위해 **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**으로 **월 10만 원**의 **현금**을 **지급 중**이다.

<주요 지원 사업 개선 전·후 비교>

구 분	이 전		개 선	시행일
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	· 다태아 일괄 140만원		· 태아 한 명당 100만원씩	'24.1~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	· 중위소득 180%까지 지원		· 소득기준 폐지	'24.1~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	·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		·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	'25.上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	· 세쌍둥이 이상 2명 지원		· 태아 한 명당 1명씩 지원	'24.1~
배우자 출산휴가	· 10일	⇨	· 20일	'25.上
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	· 1년 4개월 지원		· 2년 지원	'24.1~
아이돌봄서비스	· 다둥이 할인 미적용		·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%할인	'24.1~
첫만남 이용권	· 출생아 당 200만원		· 둘째아 이상 300만원	'24.1~
부모급여	· 월 0세 70만원, 1세 35만원		· 월 0세 100만원, 1세 50만원	'24.1~

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"작년에 다둥이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다둥이 대책을 통해 올해 다섯 쌍둥이를 맞이한 가정에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"라면서, "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보건복지부	총괄	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장은섭 (044-202-3370)
			담당자	사무관 정재민 (044-202-3363)
	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,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, 미숙아 지속관리서비스, 산모 산생아 건강관리 지원,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등	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 최영준 (044-202-3390)
			담당자	사무관 유능재 (044-202-3393)
			담당자	사무관 유미나 (044-202-3391)
			담당자	사무관 이진우 (044-202-3397)
	임신·출산의료비 바우처	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	책임자	과 장 정성훈 (044-202-2730)
			담당자	사무관 정귀영 (044-202-2731)
	부모급여, 아동수당	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정연 (044-202-3410)
			담당자	사무관 정정미 (044-202-3417)
고용노동부	임산부 태아검진시간 보장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	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정숙 (044-202-7470)
			담당자	주무관 오소연 (044-202-7471)
여성가족부	아이돌보미	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	책임자	과 장 황우정 (02-2100-6361)
			담당자	사무관 서진희 (02-2100-6365)